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(안 제22조의11 제1항)

가. 제정 이유

-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해 「플랫폼 민간 자율기구」가 운영 중이나 자율규제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실효성 확보에 한계

나. 제정 내용

-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, 혁신 촉진,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규제 업무 수행의 근거조항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에서 수행하는 자율규제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②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(안 제22조의11 제2항, 제3항)

가. 제정 이유

- 민간에서 수행하는 자율규제의 활동을 촉진하고 확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 필요

나. 제정 내용

-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및 확산 촉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③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,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(안 제22조의11 제4항)

가. 제정 이유

- 자율규제 업무 수행에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 의견 청취 노력 필요

나. 제정 내용

-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의 의견개진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간의 자율규제 업무의 투명성 확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④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중단,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고려(안 제22조의11 제5항, 제6항, 제7항)

가. 제정 이유

-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민간의 자율규제 동력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

나. 제정 내용

-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근거조항 신설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업무 수행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민간 자율규제 동력과 실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22조의11(자율규제)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, 혁신 촉진,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해 자체 또는 별도의 자율기구에서 자율협약을 정하여 시행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자율협약 등의 제정·개정</u> <u>2.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 점검 및 개선</u> <u>3. 이용자 불만 처리</u> <u>4. 이용자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, 사회문제 대응 등 상생협력</u> <u>5.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</u> <u>6. 그밖에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</u> <p><u>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</u></p>

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자율규제에 기여한 사업자·단체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
2.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
3.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요한 사항

④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 활동 및 제2항제5호에 따른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공개와 관련해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, 전문가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정부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일 것
2. 분야별 부가통신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일 것
3.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율협약 등의 객관성·집행력, 업무수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2. 제5항 각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
3. 그 밖에 자율규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를 고려할 수 있다.